

大學院教育의 内實化 方案

金 信 福

(서울大 行政大學院)

- ◇ 교육개혁심의회 제3분과(고등교육)에서는 고등교육 개혁 ◇
- ◇ 을 위한 7개 정책 과제를 연구, 지난 2월까지 심의·종결 ◇
- ◇ 하였다. 이번 회에서는 7개 정책 과제 중 대학과 대학원 ◇
- ◇ 교육 개혁의 방향과 방안을 다룬 의견 주문 및 배경에 관한 ◇
- ◇ 주관 전문위원들의 기고를 게재한다.〈편집자 주〉 ◇

1. 改革의 基本方向

關係法令에 의하면 대학원 교육의 목적은 대학교육의 목적을 한층 深奧 精緻하게 수행하는 동시에 學術研究의 指導能力과 獨創力を 함양하는데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종래 大學院教育은 극히 제한된 수의 學界 進出 希望者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대학원의 量的 規模는 배 이상으로 擴張되었으며 대학원의 기능 역시 教授要員의 양성뿐만 아니라 產業構造의 고도화에 따른 研究開發 및 高級人力의 養成供給, 대학교육 이후 단계에서의 再教育 등으로 多元化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현행 대학원 교육은 새로운 역할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급격한 量的 膨脹과 방만한 운영으로 전반적인 質的 水準 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大學院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高度產業社會의 요청에 부응하는 多元的인 機能

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根本的이고 綜合的인 개혁을 필요로 하며 그 基本方向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학원 교육의 質的 秀越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大學院學生 定員을 適正 水準으로 유지하고 大學院 設置 基準 및 學位授與 要件을 강화한다. 교육에 대한 획일적 규제는 지양해야 하겠지만 대학원의 경우 그 동안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質的 未治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일정한 最低基準의 설정 및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둘째로 研究機能의 활성화를 통해서 大學院教育에 그 효과가 확산되도록 한다. 대학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研究活動을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실적 위주의 연구 풍토를 조성한다.

세째로 대학원 교육의 質的 改善을 위한 통제는 행정 당국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를 지양하고 評價認定體制를 토대로 대학간의 自律的 調整機構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네째로 대학원 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多樣化에 부응하여 대학원의 教育理念과 目標, 教育課程과 學位授與 基準을 다원화한다.

다섯째로 教育與件 改善 및 行·財政 支援에 있어서 대학 과정에 대한 비중을 제고하고 教育資源의 效率적인 활용과 공동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學科間·大學間·產學間의 協力體制를 강화한다.

2. 大學院教育의 改革方案

1) 教育理念과 體制

大學院에 대한 教育需要가 크게 늘어나고 학생 수 등量的 規模도 크게 성장하였지만 一般大學院과 專門大學院의 기능과 역할이 명료하게 규정되지 못한 채 產業社會의 多樣한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專門人力의 양성과 再教育은 專門大學院의 기능인 것으로 간주되어 一般大學院에서는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專門大學院의 기능을 格下시키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專門大學院이 力點을 두고 있는 계속교육 기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一般大學院의 應用分野에도 擴散되어야 한다. 專門職 취업자들의 계속교육 필요성은 날로 增大되고 있으며 이는 특정한 학문 분야에 국한되는 현상도 아니다. 예컨대 전문대학원에 學科가 거의 없는 理工系 학문 분야의 경우에 고급 기술자에 대한 계속교육의 필요성은 결실하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모든 應用學問分野의 대학원 과정에서 現職者들에 대한 夜間制, 季節制 등 定時制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일반대학원에서도 계열이나 학과에 따라 學者養成課程과 재교육 과정을 함께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안 1〉 대학원 교육의 秀越性을 제고하고 大卒 就業者들을 위한 繼續教育機能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원의 教育理念과 目標, 教育課程을 연구 중심 과정과 再education課程으로 이원화한다.

○ 현재의 一般大學院과 專門大學院의 二元體制를 계속 유지·발전시킨다.

○ 機關 單位의 二元化와 병행하여 동일 대학원 또는 동일 학과에서도 二元化된 教育目的과 課程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大學院 教育은 대학교육의 목적을 한층 심오 精緻하게 수행하는 동시에 학술 연구의 指導能力과 獨創力を 함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은 學士課程보다 한층 세분화되고 專門化된 학과 및 專攻領域을 설정하는 것이合理的이다. 그러나 현재 각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學科들을 보면 그러한 원칙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으며 학사 과정에 지나치게 細分化된 학과들을 설치하고 있는 사례는 더 많다. 또 동일한 학문 분야인데도 학과의 名稱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으며 學科內에서 專攻에 따라 教科課程의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하기보다는 지나치게 別一的인 제약을 받고 있다. 대학원의 編制에 있어서도 學部에 同一한 학과가 없거나 學士課程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大學院을 설치할 수 없는 등의 규정은 재걸토의 여지가 있다.

〈제안 2〉 大學院教育의 理念과 目的에 비추어 碩·博士課程이 설치되어야 할 學問分野를 선별하여 大學院 編制를 再調整한다.

○既存의 大學院 學科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학문의 성격상 大學院課程에 적합한 學科들만 存置하도록 한다.

○大學院의 學科內에서 專攻의 설치는 각 大學(校)이 自律的으로 調整할 수 있게 한다.

○特殊한 분야의 경우에는 4年制 學部課程이 없는 單設大學院(예: 神學大學院)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大學(校)들은 獨自의 發展模型이나 與件의 特수성을 감안함이 없이 대규모화를 追求하고 있다. 즉 모든 單科大學들이 대학원을 설치하고자 热望하고 있으며 일단 설치되면 가능한 한 많은 學科를 개설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경향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므로 정부 차원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大學(校)의 設立主體, 所在地域, 教育與件 등을 감안하여 相對的으로 比較優位가 있는 분야에만 대학원 과정의 설치를 인가하고 중점적으로 육성

하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誘導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종래에 工科大學에 대해서는 이러한 特性化 시책을 적용한 바 있으며 현재 연구소의 選別育成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거니와, 대학원 과정의 설치·육성 역시 그러한 방향과 연계를 유지하면서 特性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안 3〉 대학원 교육의 特性화를 촉진하되 연구소의 重點育成과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 대학원에 영세한 규모의 모든 학과를 개설하기보다는 比較優位가 있는 분야 중심으로 特性화하고 學科當學生數를 一定規模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 比較優位 분야는 대학의 여건과 교수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附設研究所의 설립 육성에도同一 분야에 중점을 둔다.

대학원 교육이 경제·사회 발전과 학문 발전을 위한 學術振興과 研究開發의 中樞의인 역할을 담당하고 教授要員은 물론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급 두뇌 인력의 양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現行 學部中心體制로부터의 획기적인 전환이 오망되고 있다. 현재처럼 대폭 늘어난 學部 학생들의 교육에 급급하기보다는 대학원 교육 중심의 少數精銳教育과 연구 개발에 치중하는 先導的인 대학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先進 外國의 有數한 大學들과 경쟁할 만한 先導的인 대학들을 육성함으로써 교수 및 고급 인력의 國內養成·供給을 촉진하여 學問 및 技術發展의 植民化를 방지해야 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물론 모든 대학들을 국제 수준으로 육성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지원의 限界나 實現可能性을 감안하여 戰略적으로 그 數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안 4〉 대학원 교육 발전의 先導的役割을 담당하고 教授要員의 國內養成·供給을 확충하기 위하여 大學院中心大學을 육성한다.

○ 大學院中心大學에 대해서는 學生構成 및 資

源 配分에 있어 대학원 과정의 비중을 높이고 設置 및 支援의 기준을 별도로 제정한다.

○ 대학원 중심 대학은 우선 數個의 綜合大學을 지정하여 示範的으로 운영하고 점차 地域別로 균형 있게 그 수를 확대해 나간다.

學問의 細分化에 따라 대학원의 專攻領域이 세분화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러한 모든 전공 영역의 교육 및 연구를 충실히 할 수 있는 諸般與件, 즉 교수 및 시설을 갖추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그러한 교육 여건상의 制約을 극복하여 대학원 교육의 內實을 기하기 위해서는 大學院間의 人的·物的 資源의 共同活用을 통한 運用의 協同化가 요망된다.

대학원간의 협동은 상호 學點交換과 共同講座制, 교육 및 연구 시설의 共同活用 등 다양한 형태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質的統制와 협력의 媒介體가 될 수 있는 自律的인 협의·조정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협동 관계는 대학원 상호간에뿐 아니라 產·學·研 사이에도 형성될 수 있으므로 그것을 지원·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제안 5〉 한정된 국내의 教育資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自律的인 상호 통제를 통해 교육의 質을 높일 수 있도록 協同體制를 강화한다.

○ 大學院間의 협동 프로그램을 확대하되 自律的인 評價認定機構가 媒介役割을 담당하도록 한다.

○ 대학과 연구 기관, 대학과 산업체간의 協同體制를 확립하여 委託敎育과 자원의 공동 이용을 촉진한다.

2) 定員 및 學事管理

우리나라의 大學院 學生數는 지난 1980년 이후 5년 동안에 倍 이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80여 개의 專門大學들이 신설된 데 주로 基因하지만 一般大學의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원칙적으로 繼續敎育의 성격을 띠 定時制 프로그램을 人力需給上의 차질을 우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教授要員이나 研究要員의 양성을 主機能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高級人力資源 및 교육 투자의 낭비를 가져오지 않도록 需給上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高等教育改革의 基本方向'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정원은 궁극적으로 각 대학의 自律的인 管理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인 與件이나 일부 大學들의 受容態勢를 감안할 때 漸進的・選別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學科別 定員의 책정은 이미 각 대학(교)에 위임되어 있거나 一般大學院의 경우는 정부가 人力需給上의 큰 차질이 없도록 誘導해야 할 것이다. 또한 大學院의 정원은 學士課程과 연계 속에 책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대학(교)들이 지향하는 發展模型과 고등교육 체계 전반의 機能分擔構圖에 비추어 그 증감을 조절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 역시一方的인 規制보다는 간접적인 誘導方式에 의존하여야 한다.

〈제안 6〉 대학원의 學生定員을 人力需給 展望과 교육 목적에 비추어 適正 水準으로 유지하되 與件이 성숙된 대학들부터 自律的으로 策定・管理할 수 있게 한다.

○ 일반대학원의 정원은 碩・博士級 人力需要에 맞추어 적정화하되 教育의 質的 水準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定員의 膨脹을 억제한다.

○ 專門大學院 및 季節制・夜間制 교육 프로그램의 학생 정원은 教育與件을 감안하여 融通性 있게 조정한다.

○ 學部中心大學들은 학사 과정 교육 중심으로 特性化하도록 유도하고 大學院 新設 및 學生增員을 억제하며, 대학원 중심 대학들은 學士課程 定員을 감축해 나간다.

○ 대학원의 學生定員은 계열별로 總定員만 책정하고 구체적인 학과 정원은 정부가 제시한 人力需給 측면에서의 配分 指針에 따라 각 대학(교)이 정한다.

대학원 교육을 받고자 하는 각 개인의 動機와 사회로부터의 기대 및 需要는 多樣하지만 학문적 자질 함양을 위주로 하는 입장과 實用的 계속교육을 위주로 하는 입장으로 大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히려 대외적인 誘示用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간판 위주의 대학원 교육 수요가 많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우리의 碩・博士學位는 學問志向性(academic orientation)과 專門職業志向性(professional orientation)의 구분이 없이 單一化되어 있으며 外形上으로는 모두 學問志向의in 學位課程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專門大學院의 경우처럼 전문 직업 종사자들을 위한 계속교육이 중심을 이루는 課程도 많다.

이와 같이 학위 과정의 교육 목표와 학위 수여 기준이 分化되지 못함으로써 需要와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學問志向의 학위 과정의 不實化와 學位 자체의 豐價(prestige)를 低下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모든 학위를 같이 취급하게 함으로써 간판 위주의 대학원 진학 경향을 助長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전형적인 예로서는 開業醫들이 의학박사학위를 선호하는 현상을 들 수 있으며 많은 전문대학원 진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제안 7〉 석・박사학위를 學問學位와 專門學位로 二元化하여 이수 요건과 審查基準을 달리 한다.

○ 基礎學問分野에서는 학문학위만을 수여하고 응용 학문 분야의 경우는 學問學位課程과 專門學位課程을 並設할 수 있도록 한다.

○ 학문학위 과정에서는 獨自의in 연구에 중점을 두고 專門學位課程에서는 실무적인 경험을 중시하고 論文 대신 學點數를 늘리는 등 이수 요건을 달리 한다.

○ 학문학위와 전문학위간에 學位 名稱은 구분하지 않고, 履修課程은 學位記에 明示한다.

대학원 교육의 充實化와 일정 수준 이상의 質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學位取得要件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어느 정도의 質의 統制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 방안은 入學試驗이나 資格試驗을 공동 관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한 각 大學(校)의 自律性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制約이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代案으로 先進 諸國에서 運營하고 있는 評價認定體制를 채택하여 學位의 公신력을 높이고 각 대학원이 필수적인 교육 여건은 확보하도록 자극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대학원뿐 아니라 고등교육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하며 自律的으로 구성된 機構에 의해서 학문 분야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평가 인정 체제의 구성과 병행하여 단기적으로는 名譽 博士學位를 포함한 석·박사학위의 授與基準을 강화하여 학위의 濫發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제안 8〉 學位授與에 대한 경력 통제를 강화하여 評價認定體制(accreditation system)에 의해 서自律的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각 學問分野別로 評價委員會를 구성하여 教職員, 施設, 學事管理 등에 관한 個別 會員大學들의 교육 여건을 평가하고 學位課程에 대한 公認與否를 판단한다.

○ 評價認定體制가 확립될 때까지 학위 수여 여건을 강화하여 학위에 대한 公信力を 提高한다.

○ 名譽博士學位가 濫發되지 않도록 授與基準을 강화한다.

우리나라의 大學院課程은 先進 外國의 대학들과 달리 碩·博士課程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박사과정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시 입학 시험을 치르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지속적인 연구 생활이 일시적이거나마 종단되고 시험 준비를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다. 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신입생 선발이 制一的인 제도에 의해서 실시됨으로써 각 학문 분야 및 학과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박사과정의 입학 시험을 義務化하지 않고 自律的基準에 의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필요성은 自然系의 경우가 더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統合運營이 가능하려면 他大學(校)이나 他學科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不利益 없이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어야 하며, 타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어야 한다. 學

點移轉制는 대학원간에 교류 및 협동을 촉진하고 人的·物的 資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제도이다. 그러나 대학원 간에 학점 이전이 가능하려면 質的 수준의 同等化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각 대학(교)에서 인정의 自體 基準을 설정함과 아울러 기본적으로는 評價認定體制의 定立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안 9〉 博士課程 入試準備에 따른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고 연구의 계속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碩·博士課程을 統合하여 運營할 수 있게 한다.

○ 각 학문 분야의 特殊性과 統合 運營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制一的인 적용을 피하고 遷別의 으로 실시한다.

○ 博士課程 학생 선발에 있어서 다른 學問分野(學科) 출신을 제한하지 아니 하며 學點移轉(transfer)이 가능하도록 하되 공인된 프로그램에 한한다.

○ 석·박사과정의 統合 運營은 자연계의 學位課程부터 먼저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大學院 登錄制度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夜間部 전문대학원은 물론 주간부의 대학원 과정 在學生들에 대해서도 專任登錄義務(residence requirement)가 부과되어 있지 않아 직업을 가지고 학업에 專念하지 않더라도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 등록 學點數에 상관 없이 등록금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衡平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定時制 教育課程의 운영에 不利한 與件을 초래하고 있다. 學點單位에 따라 등록금을 差等 賦課하는 제도는 學士課程에도 필요하겠지만 대학원 과정에서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 밖에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는 履修學點을 모두 取得하여 課程을 修了한 학생은 논문 준비 기간 등안 在學生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도서관 등 학교 시설의 이용과 교수의 논문 재도를 받는데 애로가 있다는 사실이다.

〈제안 10〉 대학원 과정의 登錄制度를 개선하여 研究與件을 개선하면서 收益者負擔原則에도 부합되도록 한다.

○ 學問學位課程에 대해서는 입학 후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고 學業에 전념하게 한다.

○ 수강 학점 수에 비례하여 登錄金을 差等 徵收하는 부분(part time) 등록제를 실시한다.

○ 學點履修가 끝난 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는 研究登錄制를 실시하여 학교의 시설 및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3) 教育內容과 方法

대부분의 대학들이 제한된 施設과 教授人力을 가지고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學科間에 장벽이 높아 서로類似教科를 개설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選擇의 폭을 좁히고 있다. 學科를 가능한 한 增設하려는 것은 거의 모든 大學들의 공통적인 意向이며 그에 따라 教科課程도 세분되어 폭 넓은 專攻教育을 실시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학문 분야간의 交流와 協同을 강조하고 있는 현대 학문의 추세에 비추어 碩士課程에서도 複數의 전공 분야를 履修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도 藝體能系와 教育學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대학 나름으로 協同課程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지 않으나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相應하는 認定 및 補償이 수반되지 않아 所期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안 11〉 汎學問의 接近의 필요성에 부응하고 한정된 教授人力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學問分野間 協同教育課程을 대폭 확대한다.

○ 協同課程의 이수 사실을 學位記에 명시하여 응분의 인정을 받게 한다.

대학원의 學位課程을 學問學位課程과 專門學位課程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러한 구분은 학위의 명칭을 달리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교육의 內容과 方治에까지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두 학위 과정은 志向하는 教育目的이 相異한 만큼 가르치고 연구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歸結이라 하겠다.

현재 우리의 대학원 교육은 대학(교)에 따라 그 質的充實度와 내용이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학문의 성격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겠으나 같은 學科內에서 교육 목적이나 학위의 종류에 따라 달리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理論上으로는 물론 실제 필요에 비추어 보더라도 학문 분야에 따라서뿐만 아니라 학위를 취득하고 활동하게 될 영역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제안 12〉 大學院 教育課程의 二元化에 따라 각각의 教育目的에 부합하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深化發展시킨다.

○ 학문학위 과정에서는 研究中心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學位論文의 비중을 높인다.

○ 전문학위 과정에서는 現場事例中心의 교육을 강화하고 實務經驗과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대학에 있어서 연구 활동의 不振은 곧 학문 발전의 停滯를 의미함과 아울러 대학원 교육의 質的高 度化를 阻害하는 요인이 된다. 연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결과를 토대로 대학원 교육의 내용을不斷히 改善・補完해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원생들에게 실제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에서의 연구는 주로 個別 教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附設研究所를 중심으로 한 공동 연구나 產業界 또는 研究機關과의 협동 연구가 매우 未洽한 상태이다. 대학부설연구소는 일정한 기준도 없이 편의에 따라 설치하고 실적에 대한 평가 제도도 없기 때문에 有名無實한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연구의 구심체 役割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산학협동을 통한 연구비 지원이나 外部 연구 기관들과의 연계도 부족한 실정에 있다.

〈제안 13〉 研究活動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대학원 교육의 秀越性과 實用性을 높인다.

○ 大學附設研究所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대학원생들의 研究參與機會를 확대한다.

○ 각 분야의 國家出捐 研究機關 및 產業界研

究機關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兼任教授制 및 實務修習(intern)制를 확대한다.

4) 教育·研究與件

현재 대부분의 大學院들은 校內 혹은 校外의 강사에 의존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專任教授를 확보한 경우도 대부분 名目上의 發令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교육 내용 면에서의 體系의in 一貫性 결여, 교수와 학생간의 교류 곤란, 學事管理上의 制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慮起된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많은 大學(校)들이 대학원 강의, 특히 專門大學院 강의는 책임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當局에서도 교수 확보 기준을 算出할 때 대학원 강의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형편이다. 대학원 소속 專任教授를 꼭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異論이 있을 수 있지만 大學(校) 전체로 볼 때 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수만큼의 교수 정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절실한 과제이며, 대학원 강의는 學部 강의보다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한다는 점도 기준 설정에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수뿐 아니라 대학원의 강의, 연구 그리고 管理에 필요한 필수적인施設 및 設備는 별도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 여건의 확보 정도는 교육의 質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독립된 教育機關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要件이 된다. 따라서 大學院 設置基準을 별도로 제정하여 필요로 하는 教授定員 및 기본적인 시설의 확보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제안 14〉 大學設置基準令을 개정하여 大學院設置基準을 별도로 制定함으로써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에 필요한 교수 및施設을 확보하도록 한다.

○ 教授確保基準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대학원 강좌에 대해서 學士課程보다 2倍 이상의 加重值를 부여하여 그에 상응하는 교수 정원을 확보하게 한다.

○ 大學院生 研究室과 연구용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施設基準을 개정한다.

현재 교수들은 週當 10시간 內外의 강의 책임을 맡고 있으나 실제 강의 시간은 그보다 많은

것이 보통이며, 그 밖에 學生指導와 論文指導 등으로 연구 시간에 상당한 制約를 받고 있다. 대학에 따라서는 6개월 또는 1년 동안 강의 부담을 면제받는 研究教授制度를 실시하는 곳도 있으나 교수 확보 상황이 法定定員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극소수의 교수들만이 혜택을 받는 실정이다.

연구 시간의 不足과 더불어 경쟁적 研究風土의 缺如로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沮害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수들의 연구 업적에 대한 심사는 多方面에 걸쳐 실시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差等待遇를 받는 예도 거의 없다. 研究費의 配分에 있어서도 연구 계획이나 연구자의 능력에 따라 경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제안 15〉 교수들의 研究與件을 記기적으로 개선하여 연구의 성과가 大學院教育에 贊成되도록 한다.

○ 研究年(Sabbatical year)制를 실시하여 일정 기간 근무 후에는 1년간 有給休暇를 받아 研究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

○ 教授들의 研究實績에 대한 합리적인 評價基準을 學問分野別로 정립하고 研究實績 評價結果를 任用·昇進에 반영한다.

○ 研究費 支援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研究實績과 研究計劃書에 대한 審查結果를 토대로 하여 按配式 配分을 止揭한다.

研究는 교수들이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기능 중의 하나이지만 講義와 學生指導 등으로 시간상의 制約를 많이 받는다. 그러므로 대학 부설 연구소들이 대규모의 受託 또는 自體 연구 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專任研究人力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학 부설연구소들은 관련 학과의 교수들을 형식적으로 兼任研究員에 위촉하고 있으며 실제 연구 과제의 수행에 있어서도 數名의 관련 분야 교수들이 강의와 병행하여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연구를 소홀히 하게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연구소의 운영에도 여러 가지 애로를 가져오게 된다. 외국의 대학들은 專任研究教授들의 數도 많거니와 노벨賞受賞을 비롯한 뛰어난 업적을 많이 내고 있으며 後進研究人力을 양성하는 데도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안 16〉 大學에서의 高級研究人力을 補強하기 위하여 大學(校) 附設研究所에 學科所屬 教授 이외의 專門研究要員들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大學(校) 附設研究所에는 研究專擔教授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은 學科所屬 教授와 交流할 수 있게 한다.

○大學(校) 附設研究所에 博士後 課程 研究員(postdoctoral fellow)制를 導入하여 박사학위所持者를 契約制로 채용할 수 있게 한다.

대학원 교육은 국가 사회의 발전에 있어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에 비추어 안정된 與件 속에서 勉學에 專念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고등교육에 대한 公共投資가 막대할 뿐 아니라 대학원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 學士課程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들은 재정 지원도 學部 중심으로 하고 있고 專門大學院 등은 오히려 收入源으로 간주하고 있는 경향이다. 장학금 지원이나 기숙사 配定에 있어서도 大學院生들의 受惠비율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우수한 대학 졸업생들은 학비 면제는 물론 生活費까지 지원해 주는 외국의 대학원에 진학함으로써 유능한 研究補助員들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고 국내 대학원생들의 資質低下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제안 17〉 대학원생을 위한 奨學金 및 寄宿舍를 별도로 확보하여 研究에 專念할 수 있는 與件을 조성한다.

○大學院課程의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특히 博士課程 학생의 一部에게는 最少 生活費를 충당할 수 있는 研究獎學金을 지급한다.

○각종 研究課題에 대학원생들을 研究助員으로 참여시키도록 하고 研究助員 人件費 策定基

準을 상향 조정한다.

○주간부 專任登錄(full-time)大學院生의 25%를 수용할 수 있는 寄宿舍施設을 확보하도록 한다.

5) 行·財政支援體制

지금까지 大學院教育, 특히 專門大學院의 教育에 대해서는 質的인 통제를 거의 해오지 않았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設立認可나 學生數의 增員 그리고 學位授與基準에 대해서 學士課程의 경우와 비교할 때 지나칠 만큼 관대하게 허용 내지 放置되어 온 것이다. 高級人力需給의 均衡維持와 고등교육의 質的 수준 유지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學部만 엄격하게 통제하고 대학원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제 고등교육 인구의 構造나 대학원 교육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需要增加 그리고 학문의 高度化 추세에 비추어 대학원 교육의 質을 높이기 위한 制度的 裝置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되며, 여기에는 新設 대학원은 물론 既存 대학원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제안 18〉 大學院의 設置基準을 制定하고 評價認定體制를 통하여 週期的인 運營評價를 실시한다.

○大學院課程 新設 및 학생 정원 책정에 大學院 設置基準을 엄격히 적용한다.

○기존의 大學院課程에 대해서도 一定한 經過期間까지 設置基準의 充足을 촉구하고, 현저히 未達하는 경우에는 應分의 裁制措置를 취한다.

○장기적으로는 評價認定體制의 일환으로 大學院評價委員會(가칭)를 설치하여 영역별 분과를 두고 評價結果에 따라 각 大學(校) 學位課程의 公認與否를 결정한다.

대학에서의 연구 기능이 活性化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行·財政의 지원제도상의 문제점들도 看過할 수 없다. 많은 부설연구소들이 有名無實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일부 연구소는 자체 수입을 效率의으로 활용하면 獨立採算制 등 차울적인 운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制約를 받고 있다.

研究設備만 하더라도 老朽器械의 代替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며 보유하고 있는 器機의 유지·관리를 위해 配定되는 예산도 극히 미미 하며, 연구용 실험 실습 기기를 조작하고 관리하는 技能人力이 太不足하여 교수들의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비 지원에 있어 民間部門의 재원을 적극적으로 誘致할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하여 확보된 연구비조차도 실제 연구 활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管理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제안 19〉 大學의 研究機能을 劃期的으로 강화하기 위한 行政的·財政的 지원 조치를 강구한다

○ 대학에서의 연구 활동은 연구소가 중심이 되도록 하고 실적이 우수한 研究所들에 대해서 집중 지원한다.

○ 大學附設 特殊法人研究所의 설립을 장려하고, 同 研究所에는 國·公立 大學(校)의 경우도行政管理 및 예산 운영에 완전한 自律性을 부여 한다.

○ 研究器機의擴充을 위한 政府 財政支援을 확대하며, 특히 그 유지 관리비 및 減價償却費를 매년 예산에 計上하도록 한다.

○ 研究器機의 管理 및 技術支援을 담당할 技能員(technician) 定員을 별도로 設定·確保한다.

○ 民間으로부터의 研究費 誘致를 活性화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租稅減免 措置 포함)를 강화한다.

○ 研究費 管理는 個人單位보다 研究所單位로 합을 원칙으로 하되 研究者의 裁量權을 존중하

며, 국립대학의 경우는 研究用役을 收入代替經費化 한다.

우리의 大學院教育은 아직도 學部教育의 副隨物처럼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相對的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예컨대 所要豫算의 算出에 있어서도 學部와 大學院課程의 單位教育費를 동일하게 계산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선진국의 有數한 대학들의 경우에 대학원 과정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學士課程보다 3~5배 높게 책정되고 있다.

財政支援 및 학생의 부담에 있어서 지나치게 劃一의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는 고등교육 전반에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登錄金의 策定만 하더라도 실험 실습비 소요 등與件이 학문 분야 및 학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금액이 부과되고 있음은 不合理하다고 아니 할 수 없으며 專門大學院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 특히 그렇다고 하겠다.

〈제안 20〉 大學院課程의 운영에 대한 豫算配分比重을 높이고 收益者負擔原則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大學(校)內에서의 運營費, 奬學金 등의 配分에 있어서 大學院課程에 대한 支援의 基準 및比重을 높인다.

○ 學問分野 및 課程에 따라 등록금을 差等策定한다.

*